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. 9. 7 선고 2021가단20579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명숙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, 담당변호사 김수정, 임호택

변 론 종 결 2022. 6. 22.

판 결 선 고 2022. 9. 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8. 8. 23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18. 8. 23. 접수 제600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의 요지

소외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2. 판단

가. 관련 법리

- 1)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므로,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(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0다7783 판결, 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).
- 2)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률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).
- 3)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다47852 판결 참조).

나. 이 사건의 경우

- 1) 우선 C가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적극재산임을 전제로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,

피고는 당시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15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, 그 부동산이 모두 C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2) 그러므로 살피건대,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15개의 부동산 지분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. 그럼에도 원고는 C의 무자력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C의 적극재산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고, 위 나머지 부동산 지분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.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, 사후에 C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어 C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도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.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판사 이범용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1.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야 53777㎡
--- 지분 5079.4019/85413 전부 ---
2.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야 11098㎡
-- 지분 1059/14380 전부 --
3.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야 423㎡
-- 지분 5/60 전부 --
4. 부산광역시 기장군 하천 36㎡
-- 지분 5/60 전부 --

